02. 갑오개혁기 사법 제도의 개혁

1. 재판소의 설립
2. 재판 절차의 개혁
3. 재판 제도 운영의 실제
4. 형벌의 개혁과 실제 집행 과정

02. 갑오개혁기 사법 제도의 개혁

1. 재판소의 설립

• 개화파 주역들 ©독립기념관
왼쪽부터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김옥균. 갑신정변 직후 일본으로 망명했을 때 찍은 사진이다. 이들은 개화당을 조직하고 국정을 개혁하여 낡은 정치를 타파하려고 하였다.

1894년 6월 일본군의 경복궁 쿠데타 덕분에 정권을 잡은 개화파는 1894년 하반기부터 1896년 2월 초까지 일련의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였다. 사법 제도 개혁은 그 일환이었다. 개화파는 1894년 6월 28일 이 · 호 · 예 · 병 · 형 · 공 육조六曹를 폐지하고, 내무 · 외무 · 탁지 · 법무 · 학무 · 공무 · 농상 · 군무 등 8개 아문衙門을 설치하였다. 형조 대신 설치된 법무아문은 사법 · 경찰 · 사면 등을 관장하고, 고등법원 이하 각 지방 재판을 감독하며, 사법 인사와 민사 · 형사 재판 사무를 담당한다고 하였다. 법무아문은 이듬해 3월 25일 법부法部로 개칭되면서 검사국이 추가로 설치됐다. 검사국의 주요 업무는 전국의 검찰 및 변호에 관한 사무, 법관양성소 설치 운영 등이었다.

7월 2일에는 각급 관청과 군사 기관에서 임의로 체포 · 구금 · 재판 · 처벌하던 것을 일절 금지시켰다. 그리고 모든 죄인은 사법관이 재판하여 확정하지 않고서는 함부로 죄벌을 줄 수 없게 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천명하였다. 한국 역사상 최초로 행정 업무로부터 사법 업무를 분리하는 조치였다.

7월 12일에는 의금부를 의금사義禁司로 개칭하여 법무아문에 소속시키되 장관은 의금부판사로 칭하여 법무대신이 겸임하며 관리의 공무 집행 중 범죄를 국왕의 명을 받아 처리하게 하였다. 또한 관리들의 사적 범죄는 일반 인민과 마찬가지로 법무아문에서 처리하게 하였다. 7월 24일에는 한성부가 맡았던 모든 소송을 내무아문 산하의 경무청으로 일시 이관하였다.

한편, 1894년 하반기부터 동학농민군에 대한 재판이 폭주하자 1894년 12월 16일 의금사를 법무아문권설재판소法務衙門權設裁判所로 개칭하여 법무아문의 재판 및 형벌 집행권을 인수하도록 했다. '재판소'라는 용어는 이때 처음 등장하였다. 법무아문권설재판소의 재판 업무는 법무아문의 대신 · 협판 · 참의 등이 담당하였는데, 경성 주재 일본영사관이 회심관으로 참여하여 재판 과정에 깊이 관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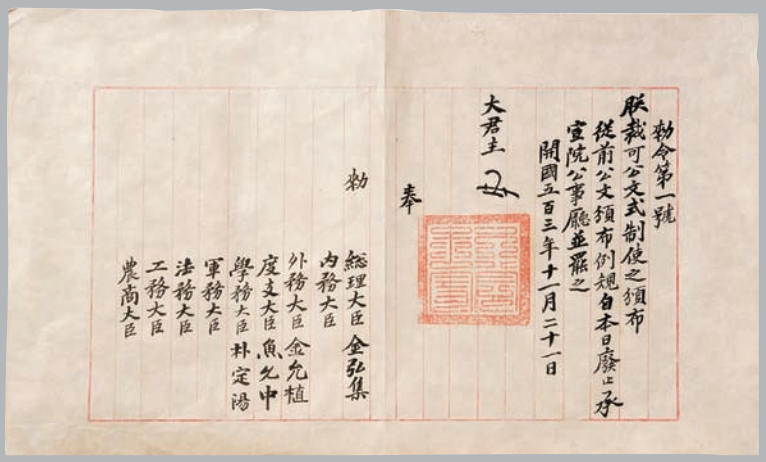

勅令第一號

朕裁可公文式制使之頒布

從前公文頒布例規自本日廢止

宮內府官廳並屬之

開國五百三年十一月二十一日

大君主 奉

勅

總理大臣 金弘集

內務大臣

外務大臣 金允植

度支大臣 魚允中

學務大臣 朴定陽

軍務大臣

法務大臣

工務大臣

農商大臣

• 「공문식公文式」(칙령 제1호, 1894)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894년 11월 21일 종전의 공문 반포 규례를 폐지하고, 총 19조로 구성된 새로운 공문식제를 반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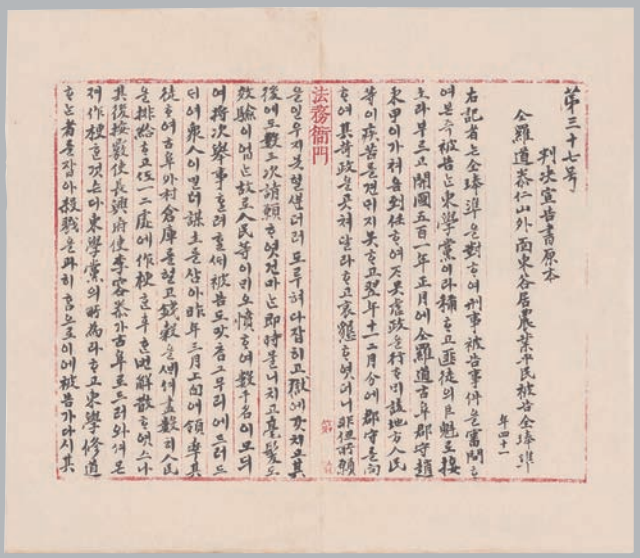

第三十七号

判決宣告書原本

全羅道泰仁山外面東谷居農業平民被告 全琫準 年四十一

右記者ノ全琫準ヲ對シテ刑事被告事件ヲ審問スルニ被告ハ東學黨ノ首魁ニシテ接主ト稱シ開國五百一年正月ニ全羅道古阜郡守趙秉甲ノ苛政ヲ矯正スルヲ名トシ該地方人民等ノ疾苦ヲ視ルニ忍ビス同年二月ニ至リ數千名ヲ糾合シ兵器ヲ携帯シテ古阜郡ヲ襲撃シ官軍ト數回戰闘ヲ交ヘタルモ利アラス更ニ全州ヲ占領シ京城ニ迫ラントスルヤ政府ハ洪啓薫ヲ招撫使ニ任シ兵ヲ率ヒテ全州ニ赴カシメ且ツ清國ニ援兵ヲ請ヒタルニ依リ日本國モ亦兵ヲ出シ仁川ニ上陸シタルヲ以テ被告等ハ其ノ擧ノ利アラサルヲ知リ全州ヲ撤シテ退キ各自ノ居村ニ歸リ解散シタルニ拘ラス尚ホ其ノ非ヲ悔ヒス却テ不軌ノ擧ヲ企テ同年九月ニ至リ再ヒ兵ヲ起シ公州ニ於テ官軍ト戰ヒタルモ又敗北シテ全羅道ニ逃走シ潜伏シタルヲ以テ其ノ行方ヲ探索シ居リタルニ本年三月三十日ニ至リ被告ハ其ノ居村ニ於テ捕縛セラレタルモノナリ

法務衙門

• 전봉준 판결 선고서(1895) 일부 ©국가기록원
전봉준은 1894년 12월 2일 태인에서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된 뒤 법무아문권설재판소에서 취조를 받았다. 당시 판결서에 의하면 1895년 3월 29일 법무아문권설재판소는 전봉준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 법무아문권설재판소 판결 선고서(1895) ©국가기록원
법무아문권설재판소(1894년 12월 설치)에서 1895년 3월 2일 동학농민군에 대해 무죄 판결한 선고서이다. 판결 선고서 말미에 경성 주재 일본영사관 우치다 사다쓰찌內田定槌가 회심관會審官으로 참여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會審

京城駐在日本帝國領事 內田定槌

主事 吳容默

主事 金基萬

00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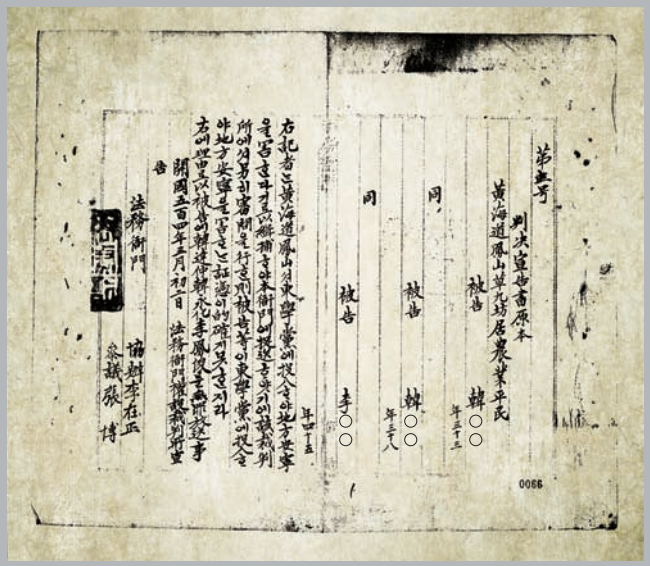

第参号

判決宣告書原本

黄海道鳳山郡居農業平民

被告 韓○○ 年三十三

同 被告 韓○○ 年三十八

同 被告 李○○

右記者ニ黄海道鳳山郡東學黨ニ関スル各地方暴動事件ニ付キ被告等ヲ審問スルニ被告等ハ東學黨ニ投シ各地方ニ於テ官吏ヲ殺害シ財産ヲ掠奪シ且ツ官軍ニ抗敵シタル所為ハ刑律ニ照シ各其罪ニ當ルヘキモノト認メラルルニ付キ各被告ヲ絞罪ニ處スヘキモノトス

右判決ヲ宣告スルニ當リ被告等ハ東學黨ニ投シタル事ハ已ムヲ得サル次第ニシテ決シテ本心ニ出テタルモノニアラス且ツ其ノ罪ハ赦免ノ恩典ニ浴スヘキモノナリト陳述シタルモ其ノ理由ナキヲ以テ之ヲ却下ス

右ノ如ク判決ヲ宣告シタルニ相違ナキヲ以テ茲ニ署名捺印ス

開國五百四年三月初一日 法務衙門

會審 諭辦李在正

參謀官 陸軍 博

00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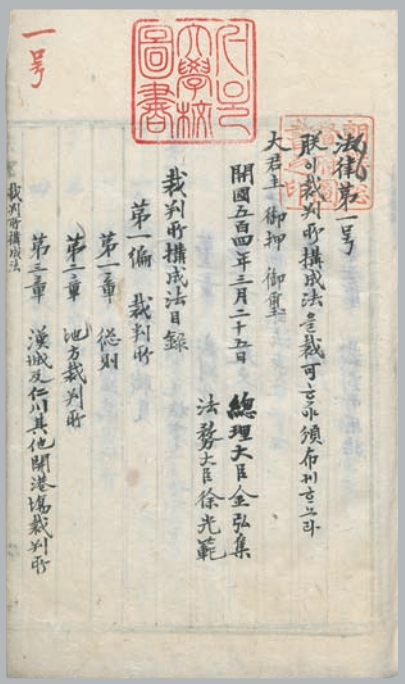
法律第一号
裁判所構成法ヲ裁可シ玆ニ頒布セシム
大君主 御押 御璽
開國五百四年三月二十五日
總理大臣金弘集
法務大臣徐光範
裁判所構成法目錄
第一編 裁判所
第一章 通則
第二章 地方裁判所
第三章 漢城及仁川其他開港場裁判所

• 「재판소구성법」(법률 제1호, 1895. 03. 25.)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895년 3월 25일 법률 제1호로 제정되었다. 당시 「재판소구성법」에는 5종의 재판소를 설치하고 3심제를 취하였다. 법관은 별도의 시험을 두어 전문직 판사가 전무專務하도록 하였다. 제정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전면 개정과 세 차례에 걸친 부분 개정이 있었으며, 1909년 10월 28일 폐지되었다.

1895년 3월 25일 「재판소구성법」(법률 제1호)이 반포되면서 근대적 재판소가 최초로 출현하였다. 재판소의 종류는 지방재판소, 개항장재판소 및 한성재판소, 순회재판소, 고등재판소, 특별법원 등 5종이었다.

지방재판소는 민사 · 형사 재판을 관할하고 단독 재판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합의 재판을 둔다고 하였으며, 지방 형편에 따라 지방재판소 지소를 둔다고 하였다. 개화파 내각은 1895년 5월 전국을 8도에서 23개 부府로 개편한 후 개항장재판소를 부산 · 원산 · 인천 3개 부에, 지방재판소를 충주 · 홍주 · 공주 · 전주 · 남원 · 나주 · 제주 · 진주 · 대구 · 안동 · 강릉 · 춘천 · 개성 · 해주 · 평양 · 의주 · 강계 · 함흥 · 갑산 · 경성鏡城 등 20개 부에 설치하였다.

〈표 1〉 1896년 1월 현재 설치된 개항장 및 지방재판소 ( ) 안은 위치

개항장재판소(3개 소)	인천재판소(인천) 부산재판소(동래) 원산재판소(원산)
지방재판소(20개 소)	충주재판소(충주) 홍주재판소(홍주) 공주재판소(공주) 전주재판소(전주) 남원재판소(남원) 나주재판소(나주) 제주재판소(제주) 진주재판소(진주) 대구재판소(대구) 안동재판소(안동) 강릉재판소(강릉) 춘천재판소(춘천) 개성재판소(개성) 해주재판소(해주) 평양재판소(평양) 의주재판소(의주) 강계재판소(강계) 함흥재판소(함흥) 갑산재판소(갑산) 경성鏡城재판소(경성)

* 출처: 「開港場裁判所地方裁判所設置에 관한 件」(칙령 제114호, 1895. 윤5. 10.), 『구한국관보』(1895. 윤5. 12.); 「開港場 · 地方裁判所를 開設하는 件」(법부고시 제2호, 1896. 01. 20.), 『구한국관보』(1896. 01. 22.); 「咸興裁判所設置에 관한 件」(칙령 제4호, 1896. 01. 11.), 『구한국관보』(1896. 01. 15.)

• 개항장 풍경 ©국가기록원
「재판소구성법」(법률 제1호, 1895. 03. 25.)이 반포되면서 같은 해 5월 인천 · 부산 · 원산 3개 부에 개항장재판소가 설치되었다. 사진은 일제강점기 부산항 · 인천항 · 원산항의 풍경이다(위로부터 시계 방향).

부산항 풍경

원산항 풍경

인천항 풍경

그러나 1896년 2월 아관파천俄館播遷으로 개화파 내각이 무너지고 같은 해 8월 정부는 지방 제도를 23부제에서 13도제로 개편하였다. 이어서 23부제에 근거하여 설치한 개항장재판소 · 지방재판소를 모두 폐지하고 새로 개항장재판소 · 지방재판소를 개설하였다. 이에 따라 개항장재판소는 1897년 말 현재 인천 · 부산 · 원산 · 경흥 · 무안 · 삼화 6개 소에, 지방재판소는 경기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황해 · 평남 · 평북 · 강원 · 함남 · 함북 · 제주목 14개 소에 설치되었다.

〈표 2〉 1897년 말 현재 개항(시)장재판소 · 지방재판소 위치 · 관할구역

재판소 명칭	위치	관할구역
한성재판소	한성	한성 5서
인천항재판소	인천	인천항
부산항재판소	부산	동래항
원산항재판소	원산	덕원항
경흥항재판소	경흥	경흥항
무안항재판소	무안	무안항
삼화항재판소	삼화	삼화항
경기재판소	한성	광주 개성 강화 인천 수원 여주 양주 장단 통진 파주 이천 부평 남양 풍덕 포천 죽산 양근 안산 삭녕 안성 고양 김포 영평 마전 교하 가평 용인 음죽 진위 양천 시흥 지평 적성 과천 연천 양지 양성 교동(3부府 35군郡)
충청북도재판소	충주	충주 청주 옥천 진천 청풍 괴산 보은 단양 제천 회인 청안 영춘 영동 황간 청산 연풍 음성(17군)
충청남도재판소	공주	공주 홍주 한산 서천 면천 서산 덕산 임천 홍산 은진 태안 온양 대흥 평택 정산 청양 회덕 진잠 연산 노성 부여 석성 비인 남포 결성 보령 해미 당진 신창 예산 전의 연기 아산 직산 천안 문의 목천(37군)
전라북도재판소	전주	전주 남원 고부 김제 태인 여산 익산 금산 임피 금구 함열 부안 무주 순창 임실 진안 진산 만경 용안 고산 옥구 정읍 용담 운봉 장수 구례(26군)
전라남도재판소	광주	광주 순천 나주 영암 영광 보성 흥양 장흥 함평 강진 해남 무장 담양 능주 낙안 무안 남평 진도 흥덕 장성 창평 광양 동복 화순 고창 옥과 곡성 완도 지도 돌산(30군)
경상북도재판소	대구	상주 경주 대구 성주 의성 영천 안동 예천 금산 선산 청도 청송 인동 영해 순흥 칠곡 풍기 영덕 용궁 하양 영천 봉화 청하 진보 군위 의흥 신령 연일 예안 개령 문경 지례 함창 영양 흥해 경산 자인 비안 현풍 고령 장기(41군)
경상남도재판소	진주	진주 김해 밀양 울산 의령 창령 창원 하동 합천 함안 함양 고성 양산 언양 영산 기장 거제 초계 곤양 삼가 칠원 진해 안의 산청 단성 남해 사천 웅천(29군)
황해도재판소	해주	황주 안악 해주 평산 봉산 연안 곡산 서흥 장단 재령 수안 백천 신천 금천 문화 풍천 신계 장연 송화 은율 토산 옹진 강령(23군)
평안남도재판소	평양	평양 중화 용강 성천 함종 삼화 순천 상원 영유 강서 안주 자산 숙천 개천 덕천 영원 은산 양덕 강동 맹산 삼등 증산 순안(23군)
평안북도재판소	정주 → 영변	의주 강계 정주 영변 선천 초산 창성 구성 용천 철산 삭주 위원 벽동 가산 곽산 희천 운산 박천 태천 자성 후창(21군)
강원도재판소	춘천	춘천 원주 강릉 회양 양양 철원 이천 삼척 영월 평해 통천 정선 고성 간성 평창 금성 울진 흡곡 평강 금화 낭천 홍천 양구 인제 횡성 안협(26군)
함경남도재판소	함흥	함흥 단천 영흥 북청 안변 정평 삼수 갑산 장진 이원 문천 고원 홍원(13군)
함경북도재판소	경성	길주 회령 종성 경성 경원 온성 부령 명천 무산(9군)
제주목재판소	제주	제주 대정 정의(1목 2군)

* 출처: 「개항장재판소 지방재판소 개설에 관한 건 · 함흥재판소 설치에 관한 건 폐지」(칙령 제54호, 1896. 08. 15.); 「개항장재판소 및 지방재판소의 개정 개설에 관한 건」(칙령 제55호, 1896. 08. 15.); 「개항장재판소 및 지방재판소의 위치를 개정하는 건」(법부령 제5호, 1986. 08. 27.); 「무안 · 삼화항에 재판소를 설치하는 건」(칙령 제36호, 1897. 10. 05.), 『한말근대법령자료집』 II, 153~154쪽 및 161~163쪽, 286~28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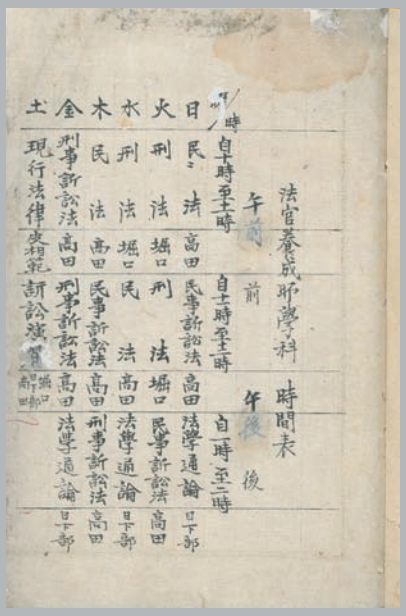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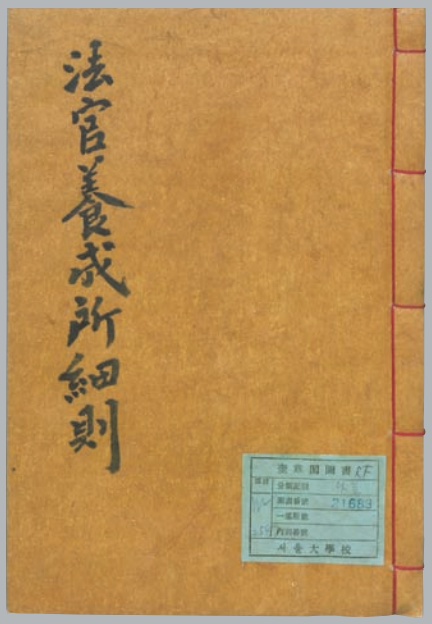

• 「법관양성소세칙法官養成所細則」(1895)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법관양성소의 교육 기간은 6개월에서 3년이고, 입학 시험 과목은 한문 작문漢文 作文, 국문 작문國文 作文, 조선역사朝鮮歷史 및 지략(지)대요地略(誌)大要 등이었다. 교과목으로는 법학통론法學通論,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기타현행법률, 연습演習 등이었다.

개항장재판소와 지방재판소의 판사 · 검사에는 별도의 사법관 시험에 합격한 자를 임명한다고 했으나 법관양성소 운영이 부진하여 법률 전문가 양성이 좌절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재판소는 관찰사가 판사를, 참서관이 검사를 겸임하고, 지방재판소 지소를 두지 않는 대신 군수로 하여금 관할구역 내 민사 · 형사 소송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개항장재판소 역시 각 항구 감리가 판사를, 참서관이 검사를 겸임하고,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의 민형사 사건을 각국 영사와 회심하는 권한을 갖게 하였다. 지방재판소와 개항장재판소는 별도의 재판소 건물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판사 · 검사 등 사법관은 모두 관찰사 · 부윤 · 참서관 등 지방관이 겸임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순회재판소는 매년 3월에서 9월 사이 법부대신이 정하는 장소에서 임시 개정하되 개항장재판소 및 각 지방재판소의 상소를 관할한다고 했으나 1899년까지 설치된 적이 없어 유명무실하였다.

독립적으로 재판소가 운영된 것은 한성에 있는 고등재판소와 한성재판소뿐이었다. 고등재판소는 별도의 독립 건물에 설립된 것이 아니라 법부 건물 내에 설립되었다. 또한 순회재판소가 거의 개설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각 개항장재판소와 한성재판소 및 지방재판소의 판결에 불복하는 상소를 수리 심판하는 최고 재판소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고등재판소는 상소심뿐만 아니라 칙임관 · 주임관의 범죄를 재판하게 되었으며,[1] 1896년 4월부터는 정치범에 관한 재판도 맡았다. 이는 구제도 하에서 의금부가 양반 관료의 범죄나 모반대역죄를 담당했던 기능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1) 갑오개혁 이후에는 종래의 문관 · 무관 18등급 관직 체계를 폐지하고 문관에 한하여 칙임관 · 주임관 · 판임관으로 나누고 칙임관은 정1품에서 종2품까지, 주임관은 3품에서 6품까지, 판임관은 7품에서 9품까지 세분하여 총 11개 등급을 두었다. 칙임관과 주임관은 조선시대의 관계로 보자면 정1품부터 종6품까지에 해당되는 고급 · 중급 관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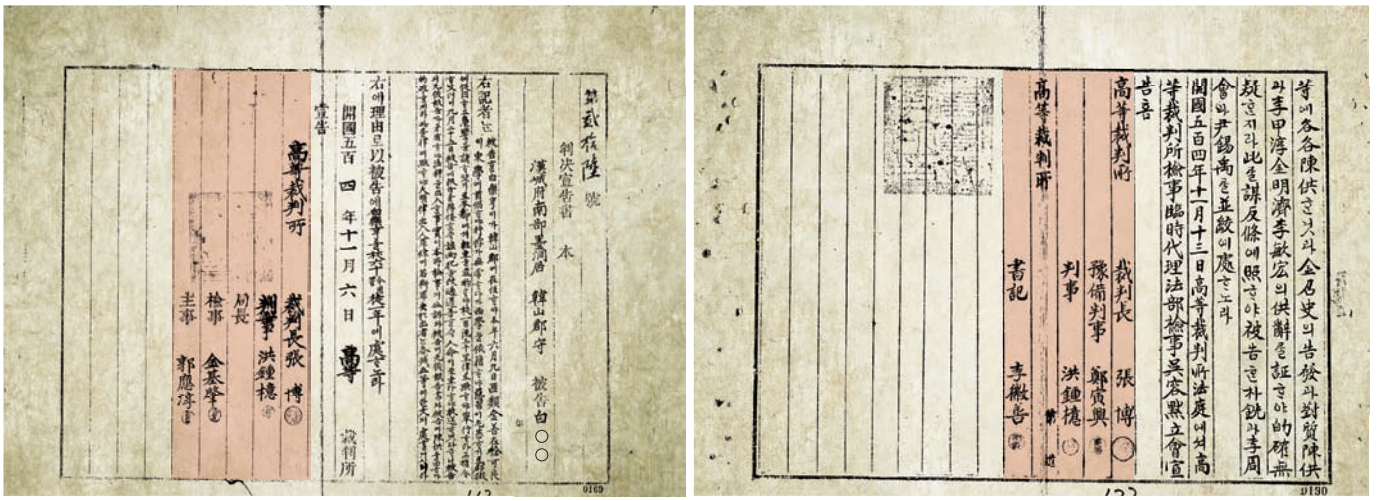

• **고등재판소 판결 선고서(1895) ©국가기록원**
고등재판소의 사법관은 재판장 1인과 판사 2인, 판사시보 · 검사시보 등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는 재판장 1인, 판사 1인, 검사 1인, 주사 1인이 관여하였거나(왼쪽, 1895. 11. 06.), 재판장 1인, 예비판사 1인, 판사 1인, 서기 1인이 담당하기도 하였다(오른쪽, 1895. 11. 13.).

고등재판소의 사법관은 재판장 1인과 판사 2인, 검사 2인, 예비판사 2인, 판사시보 · 검사시보 등으로 구성되었다. 재판장은 법부대신 또는 법부협판이 겸임하였다. 판사는 법부 칙임관 · 주임관 또는 한성재판소 판사 중 국왕이 임명하고, 검사는 법부 검사국장 또는 검사국 소속 검사 중 법부대신이 임명하였다.

특별법원은 법부대신의 요청에 의해 임시 개설하는 재판 기관으로 장소는 법부대신의 지시에 따르게 되어 있었다. 첫 번째 특별법원은 대원군의 손자 이준용李埈鎔의 정변 음모 사건을 재판하기 위하여, 1895년 4월 15일부터 전 법무아문권설재판소 자리에서 개정되었다. 두 번째 특별법원은 왕족 이재순李載純의 형사 피고 사건 재판을 위하여 고등재판소에서 1895년 11월 1일 개정되어 이듬해 1월 20일에 철파撤罷되었다. 세 번째 특별법원 역시 이재순의 형사 피고 사건을 재판하기 위하여 1898년 3월 13일부터 4월 11일까지 개정되었다.

이에 비해 한성재판소는 행정관청인 한성부와 독립한 별도의 위치인 법무아문권설재판소 자리(현 종로2가 사거리 제일은행 본점 터)에 설립되었다. 1896년 8월 지방 제도 개편에 따라 한성재판소의 관할 구역은 한성 전역뿐만 아니라 경기도내 4부(광주 · 개성 · 강화 · 인천) 34개 군에서 발생한 사건 모두를 담당하게 되어 업무가 폭주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1897년 9월 12일 경기재판소를 따로 설치하여 경기도 3부 35군의 부윤 · 군수가 내린 판결에 불복하는 상소 사건을 담당하게 하였다. 재판부는 수반판사首班判事 1인(민사 담당), 판사 1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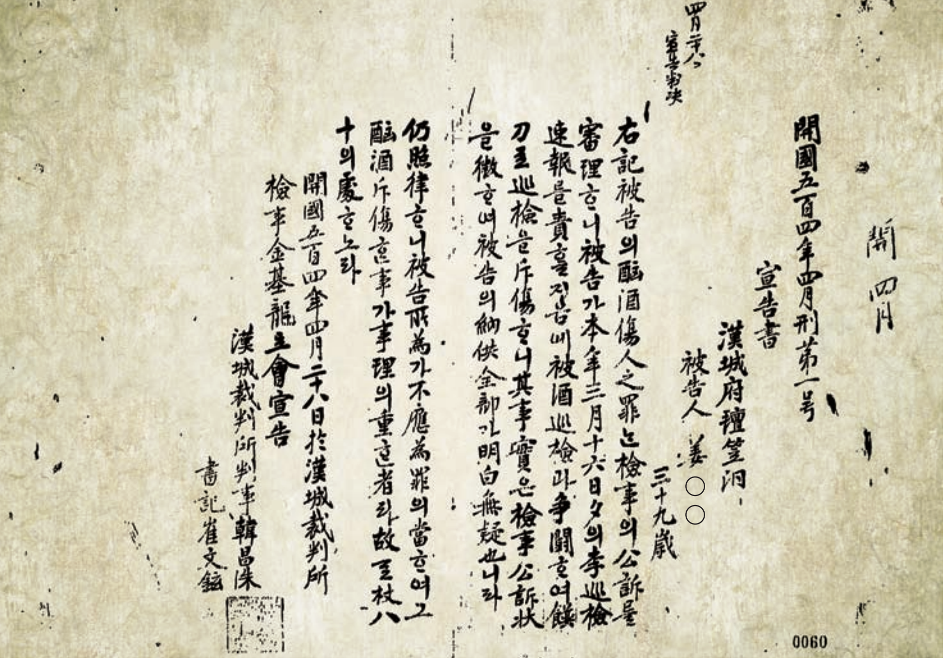

• 한성재판소 형사 제1호 선고서(1895. 04. 26.) ⓒ국가기록원

한성재판소의 현존하는 형사 판결 선고서 중 선고일자가 가장 오래된 것이다. 한성부에 사는 피고가 술을 마시고 순검을 상해한 죄를 지어 장杖80의 처벌을 내린다는 내용이다.

(형사 담당), 서기 4인으로 구성하였으며, 11월에는 경기재판소의 위치를 한성 중서 전 평시서平市署 자리로 정하였다.

이와 동시에 한성재판소의 사무 관할도 한성 5서 내의 민 · 형사 사건으로 한정하였다. 재판소 구성은 수반판사 1인, 판사 2인(민사 1, 형사 1), 부판사 1인, 서기 8인, 정리 8인을 두었다. 모든 형사 사건은 부판사가 미리 심리하여 벌금 5원(25냥) 이하, 태20도 이하, 감금 30일 이하의 사건일 경우 스스로 확정 판결을 내리고 기타 중징계해야 할 사건은 형사 담당 판사에게 넘기도록 하였다.

한성재판소와 경기재판소는 유일하게 행정권으로부터 독립한 재판기관이었다. 그러나 1898년 1월 26일 법부대신 이유인李裕寅은 상소를 올려 한성재판소와 경기재판소가 독립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 대체로 법관法官의 직무는 민사民事와 형사刑事뿐입니다. 지방에는 13부府의 관찰사觀察使가 있고, 중앙에는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이 있는데,…〈중략〉…지금 수도 안에 두 개의 관청을 특별히 설치하였으니, 하나는 경기재판소京畿裁判所라고 하는데 35개 군郡의 민사와 형사를 관할하며, 하나는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라고 하는데 5부部의 민사와 형사를 관할합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관찰사와 판윤이 맡고 있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민사'라고 하는 것과 '형사'라고 하는 것을 감히 하나로 신문하지 못하니 어리석은 자와 귀먹은 자와 같이 앉아서 월봉月俸만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중략〉…신의 어리석은 생각에는 경기에 관찰사가 있고 한성부에 판윤이 있는데 그대로 두고서 폐지할 수 없다고 하니, 경기의 재판은 응당히 관찰사에게 맡기고 한성부의 재판은 마땅히 판윤에게 맡길 것입니다. 그리하되 두개 재판소의 재판에서 만일 중요한 데 관계되어 죄를 더 주면 주었지 덜 수 없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은 관찰사와 판윤 역시 모두 두 재판소에 부탁하여, 법을 시행하는 권한으로 하여금 한곳에 집중시키고 분산됨이 없게 하며 간소화하여 번잡한 것을 제압한다면 중앙과 지방의 더없는 다행이 될 것입니다.[2]

2)『고종실록』 고종 35년 1월 26일 3번째 기사(이유인이 상소를 올려 사직을 청하다)

그의 상소는 곧바로 받아들여져 1898년 2월 9일 경기재판소를 경기관찰부 내에 합설하도록 하고, 관찰사가 판사를 겸임하고 인천부를 제외한 경기도 3부 35군에서 불복한 상소를 담당하게 하였다.

한성재판소 역시 폐지하고 그 대신 한성부재판소를 설치하였으며, 재판소도 한성부 건물 내로 옮겼다. 관할은 그대로 한성 5서 내의 민 · 형사 소송을 맡되, 인적 구성은 수반판사 1인을 한성부 판윤이 겸하고, 판사 2인 중 1인을 한성부 소윤이 겸하며 부판사 대신 검사 1인을 두었다. 외국인과의 소송을 고려하여 주사 6명 중 1명은 외국어에 능숙한 자를 두도록 하였다.

2. 재판 절차의 개혁

1895년 3월 이후 재판은 고등재판소 이하 각급 재판소가 관장하되 민사와 형사로 구분하여 처리되었다. 갑오개혁기 신분제 폐지로 인하여 양반과 상민, 노비 등 신분에 따라 달랐던 재판 절차도 일원화되었다. 다만, 관직 유무에 따라 재판소 관할이 달랐다.

일반 민인이나 하급 관리의 경우에는 피고의 거주 지역에 따라 군수재판 → 지방재판소 → 고등재판소 또는 한성재판소/개항장재판소 → 고등재판소의 단계를 거치도록 하였다. 칙임관 · 주임관 등 고급 관리와 정치범은 고등재판소, 왕족은 고등재판소에서 개정되는 특별법원에서 각각 단심제單審制가 적용되었다.

재판소라는 용어 외에 판사判事와 검사檢事라는 용어도 새로 등장했다. 판사는 민 · 형사 사건을 판결하며 범죄의 질에 따라 직접 조사하거나 혹은 다른 판사나 경찰관에게 조사를 명할 수 있었으며, 재판 선고서 등 기타 중요한 문서의 원본을 직접 작성해야 했다. 재판의 종류는 단석재판, 합석재판, 합의재판으로 나누었다. 합석재판은 판사 2인 이상이 동석하여 수반판사가 판결을 선고하되 판사 간에 의견이 다를 때는 수반판사의 의견으로 결정하였다. 합의재판은 고등재판소와 특별법원에서 하는 것으로, 판결을 평의할 때 관등이 가장 낮은 자부터 의견을 개진하기 시작하여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개진하되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 판결을 내렸다.

검사는 범죄를 수색하고 기소하며 법률의 올바른 적용을 감시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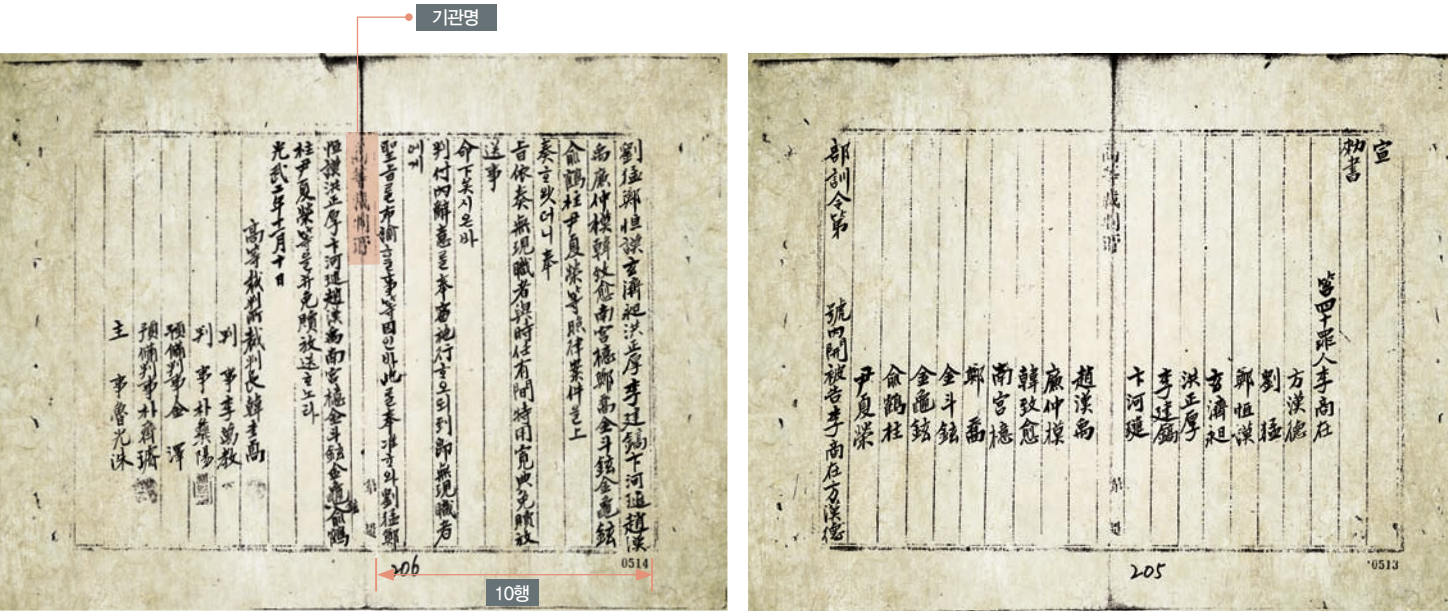

• **고등재판소 판결 선고서(1898) ©국가기록원**
고등재판소에서 사용했던 판결 선고서이다. 백지 반절 크기에 10행의 인찰지印札紙로 가운데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라는 기관명이 찍혀있다. 끝부분에는 판결년월일, 입회검사, 재판장을 비롯한 담당자가 기록되어 있다.

형벌의 집행을 청구하며 그 집행을 임검臨檢 감시하도록 하며 사형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그 집행을 책임졌다. 범죄의 고소 · 고발을 수리하며 관리의 부정 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 증거를 수집하여 징계 처분을 구하고 공소公訴를 제기해야 하였다.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면서 증인을 신문하고 범죄 현장에 임하여 관계인 및 현장에 있던 자를 신문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법 경찰관에게 명하여 범죄의 수색 보조, 영장 집행, 피고인을 잡아두는 등 광범위한 임무를 부여받았다.

모든 민 · 형사 재판은 공개하여 방청이 허락되었으며, 재판장은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자 및 기타 부당한 행위를 하는 자를 법정 퇴장시키거나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재판소에서 사용하는 용지는 백지 반절 크기에 10행의 인찰지印札紙를 만들고 1행당 20자씩 기입 등서하도록 규격을 통일하였다.

재판의 상세한 절차는 1895년 4월 「민형소송에 관한 규정」(법부령 제3호)에 규정되었는데, 오늘날과 유사한 소송 방식이 이때 도입되었다. 민사 소송은 원고인이 법정 양식의 소장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답서를 제시하도록 한다. 이때 소송인은 자기가 할 수 없을 경우 재판소의 허가를 얻어 대인代人에게 소송을 위탁할 수 있으며 변론 기록은 서기가 작성하되 당해 판사와 서기가 기명記名하고 압인押印하도록 하였다. 판결은 결심結審한 후 7일 이내에 하도록 하였으며, 판결 집행은 관할 재판소가 소송인의 요청에 따라 집행 명령서를 발급하고 재판소 정리廷吏로 하여금 집행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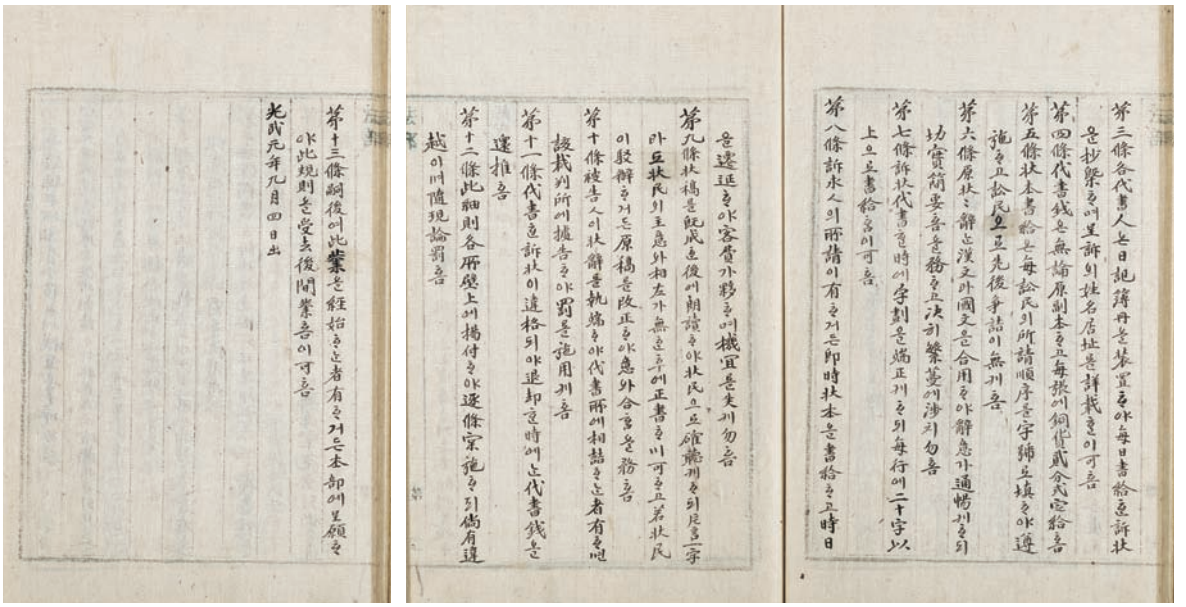

하였다. 판결 불복시 상소 기간은 판결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하였으며, 상소 기간 중이나 상소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소 재판이 완결될 때까지 판결 집행을 정지하게 하였다.

형사 소송 절차는 우선 고소와 고발을 구별하여 고소는 피해자가, 고발은 관리 또는 피해자 이외의 자가 하며, 사소私訴는 피해자가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변상받기 위하여 검사에게 제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검사는 고소 · 고발을 받고 유죄로 생각할 때 공소장을 만들고 증거물을 첨부하여 당해 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는데 재판소는 이를 받고 사건 번호를 붙여 그 순서대로 공판을 열었다.

공판정에서는 재판장 또는 판사가 피고인의 성명 · 연령 · 신분 · 직업 · 거주지 · 생장지生長地를 묻고, 검사가 사건의 개요를 진술하여 증거를 제출하고 법률 적용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면 재판장이나 판사는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을 신문하며 피고인은 무죄 증거를 제출하고 변론을 할 수 있었다. 특이한 것은 검사의 논고가 끝난 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증명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답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는 점이다.

재판장 또는 판사는 범죄 증거가 충분할 때에는 법률에 비추어 형벌을 적용하고 유죄 선고를 하되, 증거가 충분치 않거나 죄가 될 만한 것이 아닐 때에는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방면放免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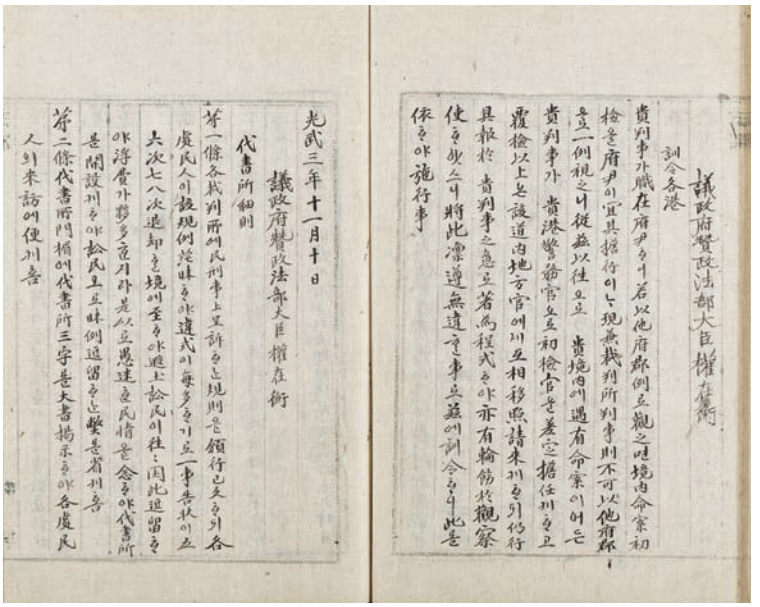
議政府贊政法部大臣權在衡
訓令各港
貴判事가職在府尹ᄒᆞ니若以他府郡例로觀之면境內命案初
檢을府尹이宜其擔行이ᄂᆞ現兼裁判所判事則不可以他府郡
을一例視之니從茲以往오로 貴境內에遇有命案이어든
貴判事가 貴港警務官으로初檢官을差定擔任케ᄒᆞ고
覆檢以上은該道內地方官에게互相移照請來케ᄒᆞ되仍行
具報於 貴判事之意로若爲程式ᄒᆞ야亦有輪飭於觀察
使ᄒᆞ야ᄉᆞ니將此凜遵無違ᄒᆞᆫ事로茲에訓令ᄒᆞ니此를
依ᄒᆞ야施行事
光武三年十一月十日
議政府贊政法部大臣權在衡
代書所細則
第一條各裁判所에民刑事上呈訴ᄒᆞᆫ規則을領行已久ᄒᆞ되各
處民人이該規例從昧ᄒᆞ야違式이每多ᄒᆞ기로一事告狀이五
六次七八次退却ᄒᆞᆫ境에至ᄒᆞ야遠土訟民이往ᄂᆞ因此退留ᄒᆞ
야浮費가夥多ᄒᆞᆫ지라是以로愚迷ᄒᆞᆫ民情을念ᄒᆞ야代書所
를開設케ᄒᆞ야訟民오로昧例退留ᄒᆞᆫ弊를省케ᄒᆞ
第二條代書所門楣에代書所三字를大書揭示ᄒᆞ야各處民
人의來訪에便케ᄒᆞ

• 「대서소세칙代書所細則」(1897. 09. 04)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대서소는 일반 사람들의 법률 행정 서류 작성을 대행하는 곳으로, 오늘날 법무사의 기원이다. 갑오개혁 이후 재판소가 개설되었으나, 민인民人은 소송 절차나 서류 작성이 서툴렀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잦았다. 이런 폐단을 없애고자 법부法部는 전체 13조의 「대서소세칙」을 마련해 공포했다. 세칙에는 대서소 설치 이유, 대서료, 서류 작성 방식, 벌칙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선고해야 한다. 이 같은 판결은 모든 변론이 끝나고 결심結審한 후 7일 이내에 내려야 했다. 검사는 사형을 제외하고는 상소上訴 기한 경과 후 곧 형벌의 집행을 명하고 이에 입회하도록 하였다. 판결에 불복할 경우 검사 · 피고 · 피해자 등이 상소를 할 수 있었는데 상소 기한은 판결일로부터 3일 내로 규정되어 있었다.

3. 재판 제도 운영의 실제

개혁 이전에는 소장訴狀을 올릴 때 백지에 써서 올렸는데, 이제는 고소 · 고발할 때 재판소명이 기재된 인찰지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를 모른 채 고소 · 고발을 하러 온 민인民人들이 인찰지를 사용하지 않아 소장을 퇴각당하는 사례가 다수 나타났다. 이처럼 규정된 양식을 사용하지 않은 소장이나 군수 또는 지방재판소의 판결을 거치지 않고 고등재판소에 곧바로 올린 소장은 당해 재판소에 의해 퇴각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였다. 민인들이 무엇 때문에 소장이 퇴각 당했는지 이유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법부에서는 담당 관원이 소장을 제출한 민인을 불러들여 퇴각 이유를 설명하고 소장 상단 여백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위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인을 찍어 주라는 지시를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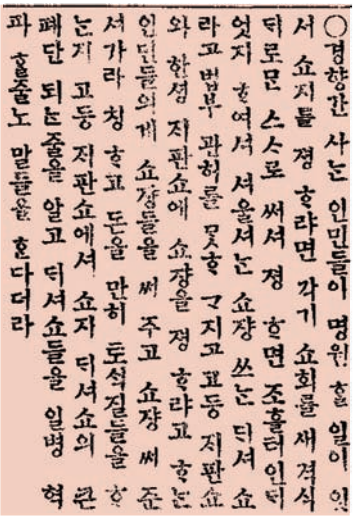

○경향간 사는 인민들이 명원 할 일이 잇
서 쇼지를 졍 ᄒᆞ라면 각기 쇼회를 새격식
ᄃᆡ로문 스스로 써셔 졍 ᄒᆞ면 조흘터인ᄃᆡ
엇지 ᄒᆞ여셔 셔울셔는 쇼장 쓰는 ᄃᆡ셔 쇼
라고 법부 관허를 맛ᄒᆞ 구지고 고등 지판쇼
와 한셩 지판쇼에 쇼장을 졍 ᄒᆞ라고 ᄒᆞ는
인ᄃᆡ들의게 쇼장들을 써 주고 쇼장 써 준
셔가라 청 ᄒᆞ고 돈을 만히 토식질들을 ᄒᆞ
는지 고등 지판쇼에셔 쇼지 ᄃᆡ셔쇼의 큰
폐단 되는 줄을 알고 ᄃᆡ셔쇼들을 일병 혁
파 ᄒᆞ올ᄉᆞ노 말들을 ᄒᆞ다더라

• 대서소代書所 폐단을 보도한 『독립신문』(1897. 08. 28.) 기사 ©한국언론진흥재단
"고등재판소와 한성재판소 소장을 대신 써주고 그 대가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등 대서소의 폐단이 크므로 혁파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서울에서는 소장을 직접 쓰지 못하는 민인들에게 돈을 받고 영업하는 대서소代書所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이들 대서소는 법부의 허가를 받았다고 하면서 소장 써준 대가를 과다하게 받는 행태가 빈번하였다. 이에 법부는 1897년 9월 「대서소세칙」을 반포하고, 대서업을 하려는 자는 법부에 신청하여 「대서소세칙」을 받은 후 개업하도록 하였다. 고소장은 국한문 혼용으로 하되 한 줄에 20자 이상 쓰도록 하였는데, 수수료는 한 장당 동전 2푼씩 받도록 제한하였다.

개혁 이전에는 민인들이 관찰사 · 수령을 고소하면 엄벌에 처했지만 이후에는 관리의 우월적 지위가 폐지되어 중앙 정부 관료나 관찰사 · 군수 등 지방관의 비리를 고소 · 고발하는 사례가 격증하였다. 특히 독립협회가 만민공동회를 주도하면서 정부 대신들을 재판소에 고발하고, 이러한 사례가 『독립신문』 등을 통해 전국 각지에 전파되어 각지 민인들이 지방관의 부정부패와 탐학상을 고발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피의자 체포와 신문 과정에도 몇 가지 개선이 이루어졌다. 첫째, 체포영장 제도가 도입되어, 검사가 영장을 발부하여 경무청警務廳으로 보내면 경무청 순검이 이를 가지고 피의자를 잡아오도록 하였다. 예컨대, 1895년 8월 7일 한성재판소 검사 주사가 법부 형사국에 보낸 협조 공문에 의하면, "관리의 집에 몸을 의탁한 여자종 김조이를 잡아들이려고 영장을 발급했는데, 그녀가 그 집 안방에 숨어 나오지 않으니 법부에서 경무청에 공문을 보내 그녀를 즉각 체포하게 해달라"고 하였다.

둘째, 이전에는 문관 · 무관 등 양반 및 양반가 부녀를 체포할 때는 국왕의 결재를 받아야 했지만 갑오개혁으로 신분제가 폐지된 이후에는 국왕 친족의 범죄 및 관원의 공죄 이외에는 모두 왕의 결재를 받지 않고 체포하게 되었다. 이후 이 규정이 너무 급진적이라고 하여 1896년 4월에 칙임관은 국왕의 결재를 받은 후 잡아들이고 주임관은 먼저 잡아들인 후 결재를 받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셋째, 체포해 온 피의자를 신문할 때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매질을 하는 것은 이전과 마찬가지였다. 다만, 큰 매가 아니라 가죽 채찍이나 작은 매를 사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또한

가벼운 죄는 10대 이상, 무거운 죄는 20대 이상을 때리지 못하며 그것도 하루에 1회를 넘을 수 없고 피의자 1명에 대해 세 차례 이상 할 수 없도록 하였다.

피고에 대한 수사가 완료되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판사는 피고를 공소장에 의거하여 심리하고 법률 적용 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이때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량을 가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새로 제정되었다. 1895년 특별법원에서 흥선대원군의 손자 이준용의 정변음모 사건을 처리할 때 적용한 죄목이 『대명률』 상의 모반죄였는데, 이는 무조건 사형에 처해야 하는 죄로 감형할 수 있는 규정이 전혀 없었다. 흥선대원군이 끔찍이 아끼는 손자를 사형에 처할 수 없었기에 내각은 특별법원의 판결 선고 하루 전날인 4월 16일 「유형분등과 가감례에 관한 건」 및 「특별법원에서 형벌을 작감하는 건」을 각각 제정 · 반포하여 이준용의 죄를 특별히 2등급 감경해 10년 유형에 처하였다.

이후 이 형벌 가감에 관한 규정을 각급 재판소에서도 준용하도록 하되, 각급 재판소에서 형을 감경할 여지가 있을 때는 반드시 상급 기관인 법부의 지령을 청하여 행하도록 하였다. 이와 아울러 종신 징역형 및 종신 유형 이상에 해당하는 사건이나 법률 적용상 의문이 있을 때도 반드시 법부의 지령을 청하도록 하였다.

개혁 직후에는 고등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리면 그것으로 형이 확정되고 집행되었다. 그런데 1896년 2월 아관파천我館播遷으로 국왕권이 회복되면서 중요 범죄에 대한 판결은 법부대신 또는 국왕의 재가를 받아야 형이 확정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1896년 4월 이후 각 재판소에서는 종신 징역형 이상에 해당하는 죄인은 반드시 법부대신의 지령을 받아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였다. 정치범을 유배형에 처할 때, 특별법원에서 범죄자에게 징역형 이상을 선고했을 때, 사형을 판결 선고한 후에도 반드시 국왕에게 상주上奏한 후 그 재가를 거쳐야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

판결 확정 이후 국왕이 조칙으로 사면령을 반포하면 형 집행이 보류되거나 감형 또는 무조건 석방되었다. 재판이 진행 중일 때도 사면령에 의하여 석방되는 경우도 있었다. 사면령은 개혁

■ **「유형분등과 가감례에 관한 건」(법률 제4호, 1895. 04. 16.)**

第一條 流刑은 分ᄒᆞ야 左의 三等으로 ᄒᆞ니
其 加減例도 亦 左의 順序에 依홈
一等 流終身
二等 流十五年
三等 流十年

第二條 現行 刑律 中 流三千里ᄂᆞᆫ 流終身이며 流二千五百里ᄂᆞᆫ 流十五年이며 流二千里ᄂᆞᆫ 流十年으로 定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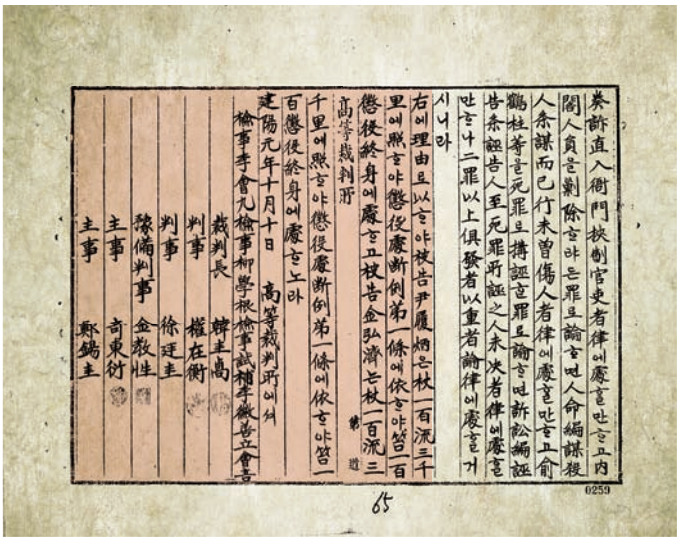

• 고등재판소 판결문(1896)

피고들은 고등재판소(1896. 10. 10.)에서 모살미수죄에 해당하는 형을 받았다. 재판장은 장杖 100 유流3,000을 「징역처단례」 제1조에 근거하여 태笞100 징역 종신형으로 판결했다(오른쪽). 한편 같은 달(10. 22.) 법부는 고등재판소에 피고들의 형을 감경하라는 특지特旨를 내렸다(왼쪽).

이전과 다름없이 정권의 변동기나 신년 초, 황태자의 쾌유와 탄신일 등을 맞아 매우 빈번하게 반포되었다. 또한,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죄목이 많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사면될 수 있는 범죄가 많아졌다.

개혁 이전 통상적인 사면령을 내릴 때 포함시키지 않는 죄목은 매우 다양했다. 십악十惡,[3] 살인, 강도, 절도, 강간强姦, 사기, 관물 절도, 방화, 굴총掘冢, 뇌물 수수, 조세 횡령, 인신매매, 타인을 사지死地로 모함한 죄, 고의로 피의자의 죄를 늘리거나 줄인 죄, 범인인 줄 알면서 도망치게 하거나 숨겨준 죄 등이었다.

1880년대에 반포된 사면령을 보더라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죄목은 비슷했다. 즉, 모반謀反,[4] 대역, 모반謀叛,[5] 자손으로 조부모 · 부모를 모살하거나 구타 모욕한 자, 처첩으로 남편을 모살한 자, 노비로서 상전을 모살한 자, 계획적으로 살인한 자, 귀신이나 고독蠱毒을 부린 자, 국가 강상 범죄, 수뢰 · 횡령죄, 강도 · 절도 등의 범죄는 사면해 주지 않았다.

그런데 갑오개혁 이후에는 사면 제외 대상이 매우 단순화되어, 모반 · 살인 · 절도 · 강도 · 간통 · 편재騙財[6] 등 여섯 가지 죄목(이하, '육범'이라고 함)으로 한정하였다. 그만큼 사면 대상에 포함되는 범죄가 확대되었다.

3) 모반 · 대역 · 악역 · 부도 · 대불경 · 불효 등 삼강오륜을 크게 훼손한 범죄 행위 열 가지를 십악이라 불렀다.

4) 국가나 군주의 전복을 꾀하는 죄.

5) 자기 나라를 배반하고 남의 나라를 좇기를 꾀하는 죄.

6) '편재'란 협박 · 사기 · 도박 등으로 타인을 기만하여 재물을 취득한 행위를 말한다.

4. 형벌의 개혁과 실제 집행 과정

사법 제도 개혁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형벌의 개혁이었다. 조선 후기 이래 가혹한 형벌을 폐지해 왔지만 기본적으로 태형 · 장형 · 도형 · 유형 · 사형 5종의 형벌이 유지되었고, 각 형마다 다양한 집행 방식이 있었다. 예컨대 사형도 집행 방식에 따라 효시梟示, 대시교待時絞, 부대시교不待時絞, 대시참待時斬, 부대시참不待時斬, 능지처사凌遲處死 등이 있었다.

형벌 개혁은 연좌제를 폐지한 점, 능지처사형 · 참형을 폐기하고 민간인에게는 교수형, 군인에게는 총살형을 실시하게 한 점, 유형 · 도형 대신 징역형을 도입하고 장형을 태형으로 통합한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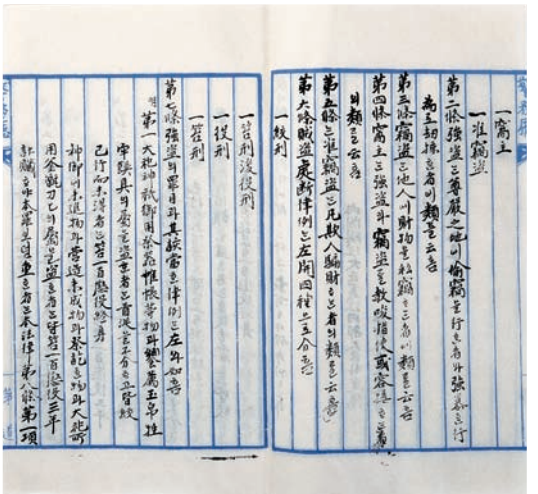

• 「법률안」(1896)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896년 4월 1일 반포된 「적도처단례賊徒處斷例」(법률 제2호)와 같은 해 4월 4일 반포된 「형률명례刑律名例」(법률 제3호)를 경무청에서 등서謄書한 책이다.

1894년 6월 28일 "죄인은 자기 이외에 연좌하는 율을 일체 시행하지 말 것"이라고 하여, 모반 · 대역 · 악역 · 부도 · 대불경 · 불효 등 10악의 범죄를 저지른 자의 가족과 친족 또는 이웃집까지 처벌하는 연좌제가 폐지되었다. 1900년 전후 서울에 거주하면서 한국 사회의 변화상을 기록한 미국인 헐버트는 다음과 같이 연좌제가 폐지된 사실을 전하고 있다.

> 최근까지만 해도 모반한 죄수는 그 자신이 사형당함은 물론 가옥이 파괴되고 재산은 몰수되며 그 아들과 가까운 남자 친척들까지도 극형을 받으며 집안의 여자들은 남의 집 종이 되는 것이 통례였다. 최근에 와서 친척들은 죄에서 면제해야 한다는 법이 시행되었다.[7]

1895년 3월 18일 모든 사죄私罪는 벌금 · 면직 · 감금 · 도배島配 · 징역 · 사형으로 처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같은 해 4월 16일 거리를 기준으로 하던 유형 제도를 기간 기준으로 변경하여 유3천리는 유종신流終身, 유2천5백리는 유15년, 유2천리는 유10년으로 바꾸었다. 이어서 4월 29일 「징역처단례懲役處斷例」(법률 제6호)로 도형과 유형을 폐지하고 징역형을 도입하였다. 예를 들어 유15년은 징역15년, 유3년은 징역3년, 도2년은 징역2년으로 대치하였다. 다만, 정치범에게만 예외적으로 유형을 실시하였다.

형벌 개혁은 1896년 4월 1일 반포된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와 1896년 4월 4일 반포된 「형률명례」, 6월 17일의 「형률명례 개정」에 의하여 일단 완료되었다. 개혁 이전과 이후의 형벌을 대조해 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7) Homer B. Hulbert, *The Passing of Korea*, New York: Doubleday, Page & Company, 1909, p. 62.

〈표 3〉 갑오개혁 전후 형벌 체계 비교

개혁 이전		개혁 이후		
형명	형량	형명	형량	비고
사형	참형 교형	사형	교형	군률 관련은 총살형
유형	유3천리(장100), 유2천5백리(장100), 유2천리(장100) 등 3개 등급	유형	종신, 15년, 10년, 7년, 5년, 3년, 2년반, 2년, 1년반, 1년 등 10개 등급	정치범, 칙지를 받은 죄인에만 적용
도형	도3년(장100), 도2년6개월 (장90), 도2년(장80), 도1년6개월(장70), 도1년(장60) 등 5개 등급	역형	종신(태100), 15년(태90), 10년(태80), 7년(태70), 5년(태60), 3년(태50), 2년반(태40), 2년(태30), 1년반(태20), 1년(태10), 10개월, 8개월, 6개월, 4개월, 2개월, 1개월20일, 1개월10일, 1개월, 20일 등 19개 등급	① 일반 인민 유죄자에 적용 ② 관리의 사죄 ③ 역1일 속전 동전 1냥4전
장형	100, 90, 80, 70, 60	태형	100부터 10까지 10개 등급	태1대 속전은 동전 1냥4전
태형	50, 40, 30, 20, 10			

*출처: 『육전조례』 형전 율령조; 「적도처단례」(법률 제2호, 1896); 「형률명례」(법률 제3호); 「형률명례 개정」(법률 제5호), 『한말근대법령자료집』 Ⅱ, 52~66쪽, 67~70쪽, 90~91쪽.

유형은 정치범 및 국왕이 지정한 죄인에게만 실시하는 형벌로 한정되고, 등급이 3개 등급에서 10개 등급으로 늘어났다. 일반인 범죄자와 사적 범죄를 저지른 관리에게는 유형 · 도형이 징역형으로 바뀌되 5개 등급에서 19개 등급으로 세분화되고 장형이 태형으로 통 · 폐합되어 형벌의 강도는 많이 완화된 셈이다. 다만, 역형 1년 이상에 해당하는 죄수에게는 여전히 태형을 함께 집행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형벌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보기로 한다. 재판소의 판결이나 국왕의 결재에 의해 형이 확정되면 검사가 형벌과 부가형의 집행을 청구하고 그 집행에 임하여 감시하며 사형 판결이 확정될 때에는 속히 소송 기록을 법부대신에게 올려 그 지휘를 받아 사형을 집행한다고 하였다.

형 집행에 앞서 각 재판소는 판결을 선고한 후 형명부刑名簿를 만들어 본소에 두고 등본 2통을 따로 만들어 법부 및 범인의 거주지 관할 지방재판소에 보고하고, 지방재판소는 이를 다시 범인이 거주하는 군郡에 이첩하여 죄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형명부에는 죄수의 거주지, 직업, 신분, 성명, 연령, 범죄 종류, 형명 및 형기, 형기 마감일자, 초범 혹 재범 여부, 집행 경과 연월일, 범죄 사건 내용 등을 적었다.

태형은 구제도의 장형과 태형을 통합한 형이므로 집행 방식이나 태의 규격은 변함이 없었다. 부녀자에게 태형을 실시할 경우 간통한 여자는 옷을 벗긴 채 집행하고, 그 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홑옷만 입힌 채 집행하는 점도 마찬가지였다.

그렇지만 태형을 집행할 때 신분적 차별은 폐지되었다. 개혁 이전에는 문무관 및 음서를 받은 자손, 생원 · 진사, 공신의 자손 등 양반층에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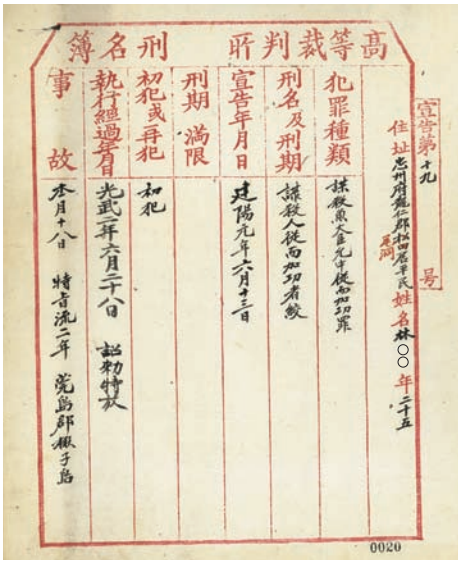

• 고등재판소 형명부刑名簿(1896)
©국가기록원

형명부에는 죄수의 거주지, 직업, 신분, 이름, 나이, 범죄 종류, 형명 및 형기, 선고 연월일, 형기 마감일자, 초범 혹 재범 여부, 집행 경과 연월일, 범죄 사건 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다. 6월 13일 선고 받은 피고의 '사고事故'란에 의하면 "18일 특지特旨로 유2년에 처해져, 완도 추자도로 유배"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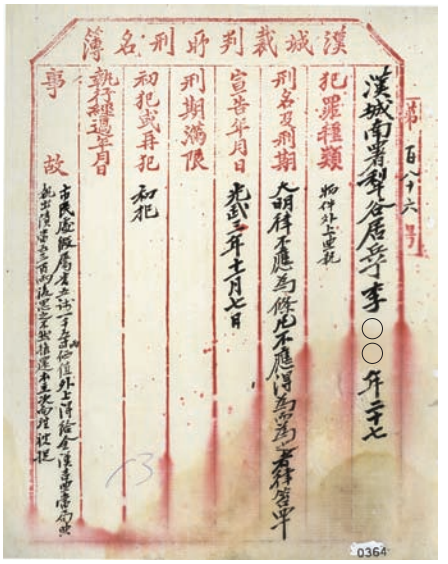

• 한성재판소 형명부刑名簿(1899)
©국가기록원

십악 · 도적 · 비법살인 · 뇌물 수수 외에는 모두 속전을 내고 태형 · 장형을 면할 수 있는 특혜를 주었다. 개혁 이후에는 양반이든 상민이든 누구나 속전을 내고 태형을 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때 태형 속전의 액수는 태1대당 동전 1냥 4전으로 규정되었는데, 개혁 이전 태10대의 속전이 7전, 즉 태1대의 속전이 7푼이었던 것에 비하면 20배로 증액되었다.

태형은 개혁 이전에는 판결이 내려짐과 동시에 집행하였지만 개혁 이후에는 상소 기한인 3일이 지나도록 죄수가 상소를 하지 않았을 때 집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죄수가 상소를 원치 않을 경우 3일 후까지 기다려야 했으므로 죄수 측이나 재판소 측이나 불편하였다. 그리하여 한성재판소가 태형 실시 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법부에서는 1896년 4월 25일 「민형소송규정」(법부령 제2호)을 개정하여 태형 선고받은 죄인이 상소를 원한다고 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태형을 실시하게 하였다.

징역형은 개혁에 의해 처음 도입된 형벌이었기 때문에 정착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걸렸다. 징역형을 집행하려면 각급 재판소에 감옥 설비가 갖추어지고 죄수의 피복비 · 식비가 마련되어야 할 뿐 아니라 죄수를 노역시킬 수 있는 작업장이나 작업 여건이 확보되어야 했다. 그러나 궁핍한 정부 재정으로 인하여 감옥 설비나 기타 여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징역형을 집행했다. 때문에 각급 재판소와 법부 사이에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었다.

개혁 이전의 감옥 설비로는 형조 산하의 전옥서, 의금부옥, 포도청의 좌옥과 우옥 등이 있었으나 1894년 좌우 포도청을 폐지하고 경무청을 창설할 때 전옥서를 감옥서로 개칭하고 옥사를 근본적으로 개축하였다. 그리고 여타

■ 전옥서(갑오개혁 이전)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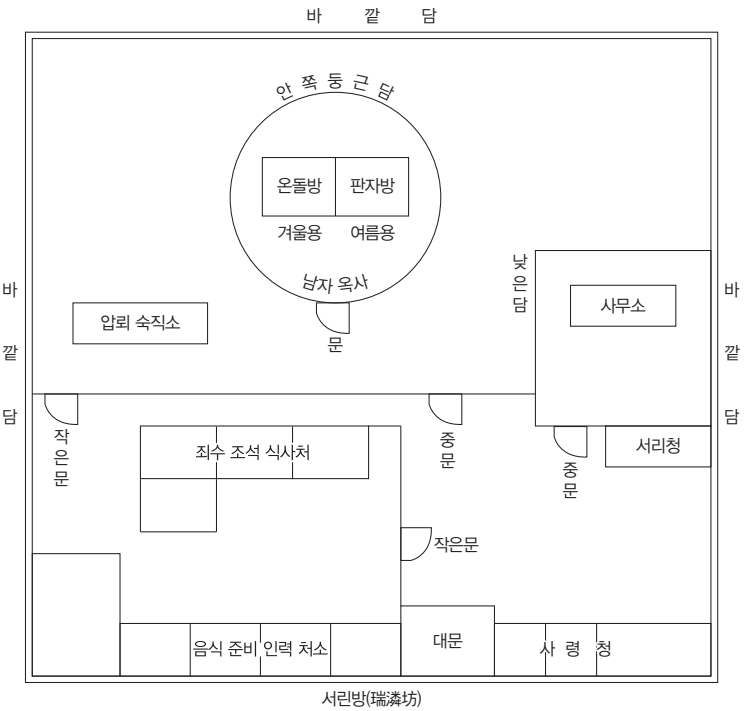

서린방(瑞潾坊)

■ 감옥서(갑오개혁 이후)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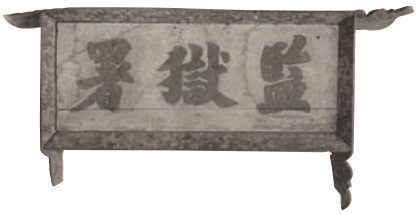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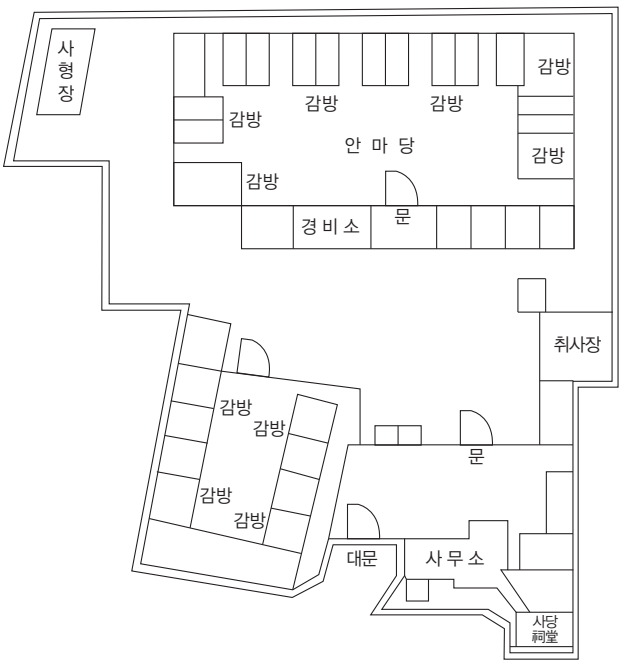

서린방(瑞潾坊)

• **전옥서典獄署 · 감옥서監獄署 현판 및 도면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조선형무소사진첩』, 1924)**

조선 후기 감옥 설비로는 형조 산하의 전옥서, 의금부옥, 포도청의 좌옥과 우옥 등이 있었으나 1894년 갑오개혁 때 좌우 포도청을 폐지하고 전옥서를 감옥서로 개칭하였다. 이후 1907년 서대문 부근에 대규모 감옥을 만들 때까지 감옥서가 유일한 감옥 설비였다.

京城監獄署新築全景平面圖

縮尺參百分之壹

• 경성감옥서 신축 평면도(1907~1908년 추정) ©국가기록원

서대문형무소의 전신인 경성감옥의 평면도. 1908년 4월 종로의 기존 경성감옥서를 인계받아 감옥 사무를 시작하였다. 평면도에는 청사 배치, 남녀 감방, 작업장, 병수감방病囚監房 등 건물의 명칭이 기재 되어 있어 당시의 계획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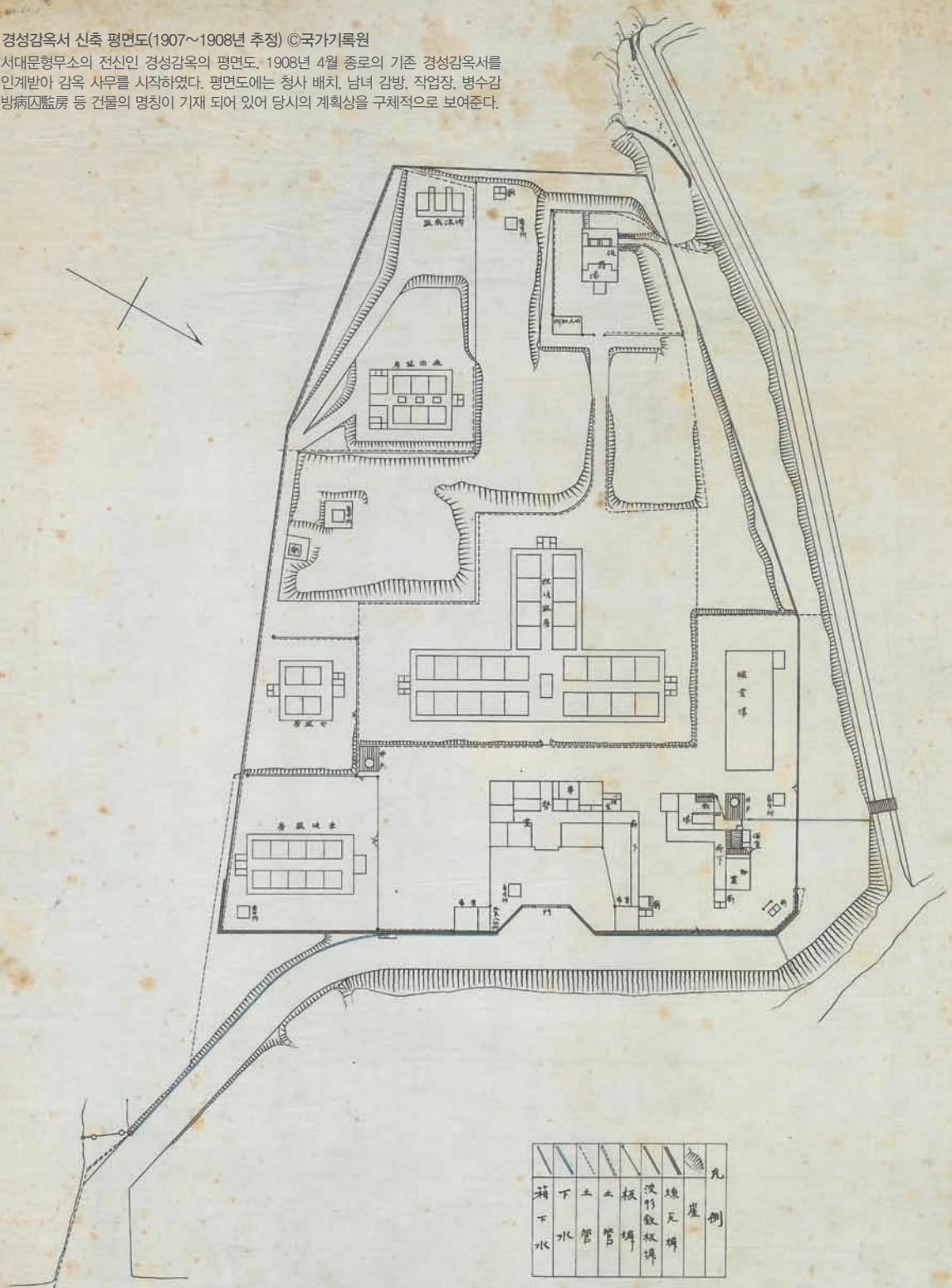

• 대한제국기 감옥 모습(1900년대 초) ©국립중앙도서관(『한국병합기념사진첩』, 1910)

옥을 모두 폐지하여 그 곳의 죄수를 모두 전옥서로 이감시켰다. 따라서 1907년 서대문에 대규모 감옥을 건립할 때까지 종로에 있는 감옥서(지금의 광화문우체국 터)가 유일한 감옥 설비였다.

감옥에서 징역 죄수에게 시키는 작업은 물 긷기와 땅 쓸기 등 몇 가지밖에 안 되며 그나마 전임 관리 또는 양반층에게는 그러한 일도 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징역 죄수가 몇 해 동안 갇혀 있다가 나오면 생활할 능력을 잃게 되어 다시 죄를 범하게 되니 징역형이 교수형보다 더 심하다는 평이 나왔다. 다만, 재감자가 식량을 스스로 마련하기 위하여 자기가 소지한 돈 또는 압뢰押牢(오늘날의 교도관)에게 빌은 돈으로 볏짚을 구매하여 감방 안에서 짚신을 삼아 이를 순검 또는 압뢰에게 위탁 매매하거나 순검 등의 감호 하에 시장에 가져가 팔았다고 한다.

그러나 종신징역 죄수들은, 의복과 음식을 제공받고 몸이 건강하면 잠시 노역하여 담배나 술도 맛볼 수 있었다. 그리고 사면령을 여러 차례 받으면 계속 감등減等되어 자유로운 세상을 다시 볼 수도 있어 이전보다는 나아진 것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유형은 징역 1년 이상에 해당하는 정치범이나 국왕이 지목한 범죄자에게 집행하였다. 유형의 집행은 법부에서 관장하다가 1896년 4월 25일 이후 고등재판소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유형 집행 절차는 대단히 번거로웠다. 1896년 초 춘생문 사건春生門事件 관련범 이민굉李敏宏 · 이충구李忠求 · 전우기全佑基 · 노흥규盧興奎의 유형 집행 관련 문서들을 통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들은 모두 종신유형을 선고받아 제주군으로 유배지가 결정되었다. 법부에서는 우선 죄수를 압송해 가는 순검과 심부름꾼의 왕래 여비와 죄수 4명의 여비 중 일부가 지방 사무이므로 여비를 처리해 달라고 내부에 요청하였다. 탁지부에 대해서도 한성에서 인천항, 인천항에서 제주군까지 여비와 기선비를 청구하였다.

경무청에 대해서는 죄인을 한성부까지 압송할 순검 3명, 제주군까지 압송할 순검과 청사의 파송을 요청하였다. 한성부에는 경무청에서 압송해 온 죄인을 인천부까지 호송할 순검을 택정擇定하여 보내라고 훈령하였다. 이어서 인천부에는 죄수가 도착한 후 감옥에 가두고 기선에 탑승할 때까지 단속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제주부에는 죄인이 외부인과 만나거나 편지를 왕래하지 못하게 일체 엄금하고 임의로 출입하지 못하게 감시하며 이들이 도착한 일시와 집행 상황을 보고하라는 훈령을 내렸다. 이와 아울러 인천부와 제주부로 보내는 훈령에는 위 죄수 4명의 연령 · 신장 · 얼굴색 · 수염 길이 · 흉터 5개 항목을 상세히 적고 그림으로 그려 죄수 신병 확인에 참고하게 하였다.

• 조선시대 귀양가는 모습을 그린 풍속화 ©국립민속박물관
목에 칼을 찬 죄인 1명을 2명의 관리가 호송하고 있다.

유형은 정치범 또는 황제의 지시로 집행하는 만큼 정치 상황의 변동에 따라 언제든지 황제의 조칙에 의하여 감등 또는 석방될 수 있었다. 따라서 정치권력의 주변에 있던 인물들에 대해서는 유배지 지방관들도 많은 예우를 해주었다. 재산이 있는 자는 유형을 가더라도 가족과 하인들을 거느리고 가서 당지 수령의 예우를 받다가 형기 만료가 한참 멀었음에도 풀려나올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반해 재산이 없는 유형수는 죽도록 고생만 하였다.

사형 집행은 반드시 법부에서 국왕에게 상주하여 재가를 거친 후 처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개혁 이전 사형 집행을 신중히 한다는 의미에서 국왕에게 세 차례 반복하여 재가를 받던 상복詳覆 절차는 폐지되었다. 사형을 반드시 음력 12월에만 실시하던 규정도 사문화死文化되었다. 대체로 양력 12월 이후 집행하였지만, 1년 중 언제든지 집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또한 군률 관련 범죄를 제외하고는 모두 교수형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대한제국을 방문한 한 외국인은 1897년 한성의 정치적 상황을 기술하면서 사형 제도의 개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긍정적인 서술을 하고 있다.

> 참혹하게 잘려진 머리와 머리가 잘린 몸체가 야만적으로 민중들에게 보여진다든지, 너무 심하게 고문해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몰고 가는 광경은 …〈중략〉…거의 볼 수 없게 되었다. 2년 전(1895년-인용자)에 나는 사람의 잘린 머리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한성 거리의 부지 위에 널려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머리가 없는 몸통들이 동대문 밖 거리에 피가 배어있는 채로 널려져 있음을 보았다.[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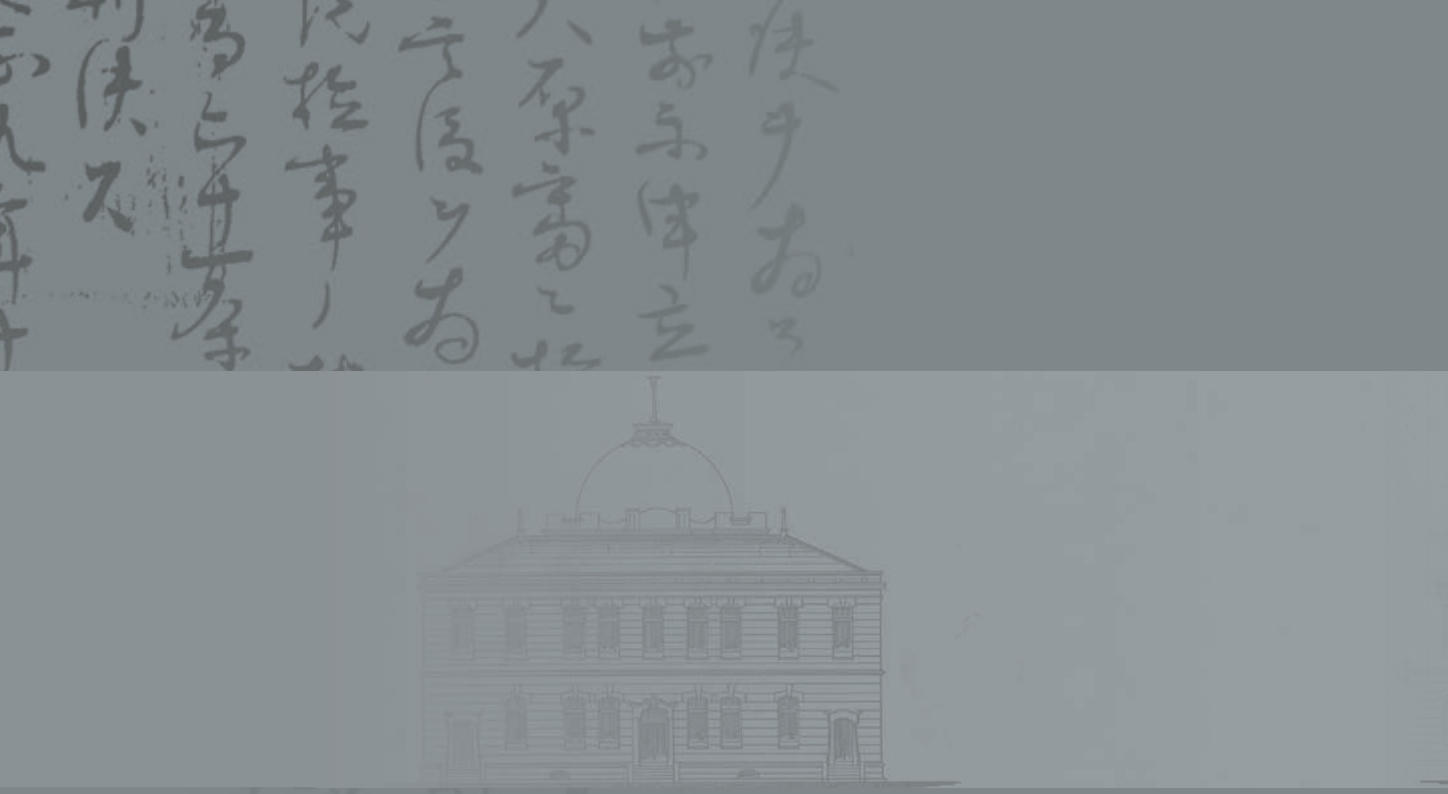
8) Isabella Bird Bishop(이인화 옮김),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 살림, 1996, 507쪽.